



실험·실습심의위원회 규정

[제목개정 2013. 5. 1]

제정일	1983. 2. 1
개정일	2021. 4. 15
개정차수	7차
담당부서	학사운영과

제 1조 (설치) 동서울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실험·실습 교육의 효율화를 위하여 실험·실습 전반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본교에 실험·실습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 5. 1)

제 2조 (구성) ① 위원회는 차·국장 및 각 학부(과)장 또는 학부(과) 추천교수로 구성하며 필요에 따라 총장이 추가로 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09. 2. 13)

② 위원장은 교무처장이 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사무를 통괄한다. (개정 2014. 1. 1, 2014. 11. 1, 2021. 4. 15)

③ 위원회의 사무는 학사운영과에서 담당하고, 소속 직원을 간사로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

제 3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실험·실습 관리의 효율적인 운영방안
2. 실험·실습 예산의 합리적 집행과 성과평가 및 예산계획 심의에 관한 사항
3. 실험·실습기자재 확충 도입에 따라 활용 증대를 위한 관리, 공동 활용, 관리전환 등에 관한 종합 조정
4. 실험·실습기자재의 공동구매 사양 결정
5. 기타 실험·실습 전반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3. 5. 1]

제 4조 (회의) 회의는 정기 또는 수시로 개최하고,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제 5조 (자료요청 및 조사) 위원회는 안건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각 학부(과)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 6조 (운영세칙) 이 규정에 규정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1983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1997년 6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5년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